■건축법 시행규칙 [별지 제11호서식] <개정 2011.4.1>

세움터(www.eais.go.kr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

• 어두운 란(　　)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일자	처리기간 일

신고인	건축주 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 전화번호 02-3706-1971 주소 은평구 통일로 1031-25(진관동)

대지위치 도봉구 도봉산길 86-2	지번 도봉구 도봉동 509-1외 1필지(509-3)
허가(신고)번호	허가(신고)일자 년 월 일

신고내용	연장존치기간 2022 년 7 월 25 일까지 연장사유 : 119산악구조대 운영으로 산악사고 및 산불발생시 신속한 인명구조 및 산불진압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기여함

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건축주 (서명 또는 인)

119특수구조단장의인

특별자치도지사, 시장・군수・구청장 귀하

신고안내			
제출하는 곳	특별자치도, 시・군・구	처리부서	건축허가(신고)부서
첨부서류	없음		수수료 원

근거법규	
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5조의2 제2항	•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14일전까지,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.

210㎜×297㎜[보존용지(2종) 70g/㎡]